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12
----------	------

2018년 4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3월 8일 신언근 의원(찬성 9명)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4월 3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희결 의원)

1. 제안이유

- 빈곤아동은 학업중퇴, 자살, 알코올 중독, 비행청소년 등의 사회적 문제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상황임에 따라 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진로상담 및 교육지원과 빈곤아동의 부모 대상 취업 알선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2호).
- 아동의 진로상담 및 교육,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1항제3호, 4호).

3.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
- 2) 예산조치 :
- 3)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사업 내용에 아동 진로상담 및 교육사업과 보호자 교육 등을 신설함으로써, 아동 빈곤예방 사업의 확대 및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2 주요사항 검토

□ 위원회 심의사항 신설 (안 제6조제1항제2호 신설)

- 개정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아동빈곤 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아동 빈곤예방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위원회 심의 사항인 ‘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은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빈곤예방법」) 제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서울시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현행 조례 제6조제2항1)에서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²⁾가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을 대신하여 맡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구체적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안건을 다루고 있지 않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u>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u>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2)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설치·운영 근거를 두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아동 빈곤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동빈곤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 수립·시행이 요구되는 바, 지금과 같은 보건복지부의 업무 해태(懈怠)와 직무방치는 부작위에 의한 아동권리 침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요구가 있어야 할 것임.

□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 확대 (안 제7조제1항)

- 개정안은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의 영역을 각각 아동에 대한 진로 상담 및 교육 사업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으로 확장하여 다차원적으로 아동빈곤문제에 접근하려는 것으로, 아동 빈곤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아동기의 빈곤은 아동의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영양 섭취, 교육 투자, 주거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청소년기-성인기까지 이어지면서 빈곤의 대물림 가능성을 높인다³⁾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일반적으로 아동 빈곤의 주요 원인은 아동이 아니라 아동의 주부양자인 부모에게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취업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여유진외(2016),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 연구」, 3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아동 빈곤 예방 사업을 확대·강화하여 아동기의 빈곤으로 인해 가난의 대물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상위법에서 규정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이 직무상 해태(懈怠)로 인해 수립·시행되지 않은 관계로, 서울시의 시행계획도 수립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아동 빈곤 예방 관련 사항들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8명, 참석위원 5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언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12
----------	------

발의년월일 : 2018년 3월 8일

발 의 자 : 신언근 의원(1명)

찬 성 자 : 장흥순, 진두생, 이혜경, 김제리,
우창운, 김동윤, 김희걸, 주찬식,
문종철 의원(9명)

1. 제안 이유

빈곤아동은 학업중퇴, 자살, 알코올 중독, 비행청소년 등의 사회적 문제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상황임에 따라 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진로상담 및 교육지원과 빈곤아동의 부모 대상 취업 알선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함 (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아동의 진로상담 및 교육,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제1항제3호,4호).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 조치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진로상담 및 교육 사업
4.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생략)</p> <p><u><신설></u></p> <p>2.·3.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2.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3.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7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u></p> <p>2.·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사업 추진 등) ①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진로상담 및 교육 사업</u></p> <p>4. <u>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u></p> <p>5.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